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지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정계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한국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썩고개로 87,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법률연맹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주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이 국회를 타락시킨다” 는 제보를 받고 **확인/분석**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상” 은 유권자 기망하며 국민혈세 낭비하는 엉터리상
국회가 감사기관인 국회운영위 등 의식한 “로비성 묻지마 상” 이란 의혹이 크고, 상금 나눠먹기 등 의원들 불만 팽배

▣ 주체측의 평가기준이라는 “가결(원안, 수정)된 대표발의 법안” 이 0건 인데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이 16명이나 되는 것도 문제지만, 통과된 법안이 0건 인데도 “정책효과나 집행비용 등을 정성평가” 했다는 것도 모순이며, 500(300)만원씩의 상금 또한 선정과정을 의심케 한다 ▣

1.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7년 3월 30일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53명**(이하는 국회 발표 31명을 분석함)을 선정하여 국회의장 명의로 시상했다. (2017.3.30.자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별첨, 국회가 비공개로 추가 시상한 정당추천 묻지마 22명중 7명도 확인됨)

그런데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의정종합감시단**의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자료<매년 6월 초에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가결 법안수,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결위, 비상설 특위활동 등 12개분야 의정활동을 평가해 매년 6월시상하고 있음>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출범이후(2016. 5. 30.) 지난해 말(2016. 12.31.)까지(국회사무처 보도자료에는 평가기간이 나오지 않았으나 의원실 및 보도내용 확인결과 지난해 말까지로 추정됨) ① 수상의원 중 가결된 대표법률안이 0건인 의원이 무려 16명이나 되고, ② 각종 출석률에 있어서 전체 300명 의원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③ **국회사무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 **각당 간사**는 가결법안 0건인 의원까지 수상하였고, ④ 보도자료(발표된 수상의원명단)에 없는 정당추천 우수의원 22명 중 7명이 추가 수상(이은권, 황영철, 오영훈, 백승주, 김정재, 이채익, 박정 의원 등도 이 상을 비공개로 수상함) 확인되는 등 제대로 정성/정량평가를 했는지 하는 **공정성 문제와 짬짜미-엉터리상이라는 의혹과 상과 상금을 받지 못한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2.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기구로서 국회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인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을 평가/시상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어 왔다. 마치 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검찰청이 법사위 위원들 을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시상/상금까지 주는 것과 같아서, 피감기관인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평가/시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더욱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우열이 뒤바뀐 엉터리 입법우수의원 및 정책개발우수의원, 최우수의원 등의 서열화와 시상이 정말로 입법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사무처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공정하게 분석·평가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관련 의혹》

- ① 대표발의해 가결된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어떻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인가?
- ② **가결법안 2건이상 의원이 21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단 1명만 정성평가 최우수의원인가?**
- ③ 정량평가 기준상 같은 조건의 의원이 26명인데, 왜 10명만 정량평가 우수의원인가?
- ④ **각종(본회의 등) 출석률이 전체의원의 평균에도 못미치는데도 “정량평가 우수의원”인가?**
- ⑤ **혈세(53명의원에 1억6천5백만원)까지 주는데 불공정하면 양질의 입법·정책개발이 되겠나?**
- ⑥ 정당추천 우수의원은 **입법성과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나눠먹기식 우수의원인가?**

별첨 1. 국회사무처 선정 우수의원의 가결법안·출석률·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분석 1부

2.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보도자료 1부.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WWW.GOODLAW.ORG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1.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우수법안 공개없이 혼란만 자초

- 정성, 정량 평가의 가결(원안, 수정)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우수의원이 27명(중복 4명제외) 중 16명이나
- 국회사무처를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간사는 모두 상받아, 김관영, 박완주 의원은 가결법안 0건이어도 상받아
- 최우수 정성평가 의원 2명은 가결법안 0건, 대안반영폐기 법안까지 합쳐도 1건, 2건에 불과
- 정성평가 우수의원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분석해 보면 해당법안에 대한 실질적 반대이견이 많아
- 정량평가 우수의원 10명의 각종 출석률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의원의 평균에도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 상금 500만원(정성), 300만원(정량) 등 우수의원에 국민의 혈세까지 주는 상은 더 공정해야
- 정당추천의원은 정당에 일임한다지만 입법성적 저조한데, 국회사무처가 공인하는 짝퉁(?) 우수의원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는 2005년부터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에도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가운데도 2017. 3. 30.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올해에는 정성평가 최우수 3명(이찬열, 이종명, 강병원 의원)과 28명의 우수의원(정성평가부문 18명, 정량평가 부문 10명)이 선정되었다. (정당추천 22명 별도) 그러나 우수법안과 우수 정책에 대한 공개가 없어 공정성 내지 평가내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결된 법안자체가 0건인 의원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량평가의 경우도 선정된 의원보다 많거나 같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이 있는 등 선정결과에 의혹/불만이 팽배함을 확인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국회사무처, 보도자료, 2017. 3.30)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의원입법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에 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29명→10명)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12명→21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일률적·단편적인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도입한 정성평가 부문은 사회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에는 가결법안건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대안반영 폐기 법안을 가결법안 건수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건수가 적어서 가결법안만을 평가할 수 없으면, 가결법안건수가 많은 의원을 우선 선정

하고, 대안반영 법안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안가결이나 대안가결건수가 없는 의원이 정성평가 최우수가 되거나 정량평가 우수위원이 되고,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건수가 많으나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적어서 우수의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법률안실명제 등의 도입이 절실할 때, 입법의 책임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의혹 1.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정량 평가 우수의원선정 기준으로 하면 총 26명이 우수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10명만 우수의원인가?

정량평가만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된 10명 중 가장 낮은 법안수를 가진 의원인 박주현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없고 대안반영폐기만 4건이다. 그런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법안까지 4건 이상인 의원은 모두 32명이다. 본회의 출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6명의 의원을 제하고도 26명이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박주현 의원과 동점이거나 상위점수를 받고 있다. 즉 박주현의원의 4점과 같은 점수를 받는 의원이 7명이고, 4점보다 높은 의원이 9명이다.

《국회사무처 기준으로 본 의정활동 정량평가 상위의원》

(굵은 글씨는 국회사무처가 선정/시상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수상자임)

의원명	당선헌수	선거구	정당	회의출석성적			입법성적(건수)			총점
				본회의출석률(%)	상임위출석률(%)	가치중	대안반영수	가결법안수	합계	
주승용	4선	전남 여수시을	국	100.00	100.00	1	15	8	23	23
박광온	재선	경기 수원시정	민	100.00	100.00	1	22	1	23	23
황주홍	재선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	국	97.06	100.00	1	4	8	12(1)	14
김도읍	재선	부산 북구강서구을	한	100.00	95.83	1	8	3	11	11
이찬열	3선	경기 수원시갑	국	91.18	82.35	0.8	10	2	12	9.6
김삼화	초선	비례대표	국	94.12	92.59	0.9	7	3	10	9
이종배	재선	충북 충주시	한	100.00	86.96	0.9	5	4	9	8.1
위성곤	초선	제주 서귀포시	민	100.00	96.00	1	5	1	6(1)	8
이우현	재선	경기 용인시갑	한	94.12	100.00	1	6	0	6(1)	8
조정식	4선	경기 시흥시을	민	91.18	100.00	1	6	1	7	7

의원명	당선헌수	선거구	정당	회의출석성적			입법성적(건수)				총점
				본회의출석률(%)	상임위출석률(%)	가치	대안 수	안 반안	가결 안수	합계	
유성엽	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	100.00	100.00	1	0		4	4 (1)	6
정인화	초선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국	97.06	96.00	1	6		0	6	6
최도자	초선	비례대표	국	97.06	100.00	1	5		1	6	6
민홍철	재선	경남 김해시갑	민	94.12	92.86	0.9	3		3	6	5.4
박남춘	재선	인천 남동구갑	민	100.00	100.00	1	3		2	5	5
양승조	4선	충남 천안시병	민	97.06	100.00	1	4		1	5	5
이개호	재선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	민	97.06	100.00	1	5		0	5	5
인재근	재선	서울 도봉구갑	민	97.06	88.89	0.9	5		0	5	4.5
권성동	3선	강원 강릉시	한	91.18	100.00	1	0		4	4	4
김광수	초선	전북 전주시갑	국	97.06	100.00	1	1		3	4	4
박맹우	재선	울산 남구을	한	100.00	100.00	1	3		1	4	4
박주현	초선	비례대표	국	100.00	90.48	1	4		0	4	4
손혜원	초선	서울 마포구을	민	100.00	91.30	1	2		2	4	4
안규백	3선	서울 동대문구갑	민	100.00	71.43	0.8	2		3	5	4
윤호중	3선	경기 구리시	민	100.00	100.00	1	4		0	4	4
이동섭	초선	비례대표	국	100.00	91.30	1	4		0	4	4

《참고》 1. 위 도표의 법안수와 출석률은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17년 6월 발표·시상할 국회의원 헌정대상(국회의원 의정종합평가상)의 기초자료로서 수집, 분석한 자료 중 국회사무처의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비교한 것임.
2. 국회사무처에서는 2016. 5. 30.부터 2016. 12. 31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기본점수에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 순으로 정량평가 우수위원을 선정하였다고 함(가결법안에는 대안반영폐기법안을 포함함)
3. 법안성적 합계의 괄호안은 국회사무처에서 가중치 3배를 주었다고 하는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률안 수임
4. 국회사무처의 출석률 가중치는 95%이상을 1로 하여 5%p마다 0.1씩 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의혹 2. 정당추천이면 심사도 없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인가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정당별 우수의원 추천 22명은 정당에 일임하고, 각 원내정당 별 추천인원수는 2016. 12. 31. 기준 소속위원수에 비례하여 할당한다고 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우수의원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이라는 타이틀로 홍보한다면 이는 짜통상이 아닌가?

국회사무처의 3. 30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은 우수의원들은 시상식이후에 추가로

선정된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정당추천 우수의원인지 의혹이 제기된다.

더욱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의원들의 성적은 좋지 않다. 즉, **박정 의원이나 이채익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안반영폐기법안조차도 없어서 제20대 국회 첫해에 가결 법안 건수가 0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정활동 정량평가 점수는 국회사무처 기준에 의하면, 출석률이 어떠한든 모두 ‘O’ 점이 되어야 한다.

《언론에 홍보되어 확인된 비공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의정활동현황》

기간 : 2016.5.30.~2016.12.31

의원명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수	대안반영폐기된 대표발의법안 수	본회의출석률	상임위출석률
김정재	0	0	94.12%	84.62%
박정	0	3	100.00%	94.12%
백승주	0	0	91.18%	81.25%
오영훈	0	0	94.12%	100.00%
이은권	0	0	100.00%	84.21%
이채익	1	0	100.00%	100.00%
황영철	0	0	97.06%	86.36%

《참조》 위 도표의 법안수와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17년 6월 발표·시상할 국회의원 헌정대상의 기초자료로서 수집, 분석한 자료 중 국회사무처의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비교한 것임

의혹 3.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법안이 없는 의원이 왜 입법 우수의원인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최우수 및 우수의원 중 무려 16명이나 단 1건의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없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의 형태로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정성 및 정량 평가라고 하더라도 평가기간 동안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단 1건도 가결시키지 못한 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회사무처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가결된 법안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가결된 법안이 없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국회사무처는 밝혀야 할 것이다.

의혹 4. 같은 조건의 의원이 21명이나 되는데, 유독 한 의원만 최우수 의원

최우수 의원 3명 중 2명(이종명, 강병원 의원)은 가결된 대표발의 법안이 없었고, 이찬열 의원은 수정가결된 법률안이 2건 있었다. 12월 31일까지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이 된 법률안이 2건 이상 의원은 21명이나 되었는데, 왜 이들은 정성평가 최우수는커녕 우수의원도 못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특히, 권성동, 유성엽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된 대표발의 법안이 4건임에도 정량평가는 물론 정성평가에도 들지 못하였다. 3건의 민홍철, 안규백 의원 역시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이때의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찬열 의원과 같이 2건인 김민기, 박경미, 박남춘, 박덕흠, 소병훈, 손혜원, 안상수, 우상호, 이철우, 이학재, 홍문표 의원 등은 국회사무처에서 평가하기에 부실한 입법으로 가결건수만 올린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제20대국회 첫째(2016년도) 원안 및 수정가결된 대표법안건수 상위의원 현황》

(굵은 글씨는 국회사무처가 선정/시상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수상자임)

의원명	원안가결	수정가결	합계	참고(대안반영 폐기법안수)
주승용	7	1	8	15
황주홍	4	4	8	4
권성동	0	4	4	0
유성엽	0	4	4	0
이종배	3	1	4	5
김광수	3	0	3	1
김도읍	0	3	3	8
김삼화	2	1	3	7
민홍철	1	2	3	3
안규백	2	1	3	2
김민기	0	2	2	1
박경미	1	1	2	0
박남춘	0	2	2	3
박덕흠	0	2	2	0
소병훈	1	1	2	1
손혜원	2	0	2	2
안상수	1	1	2	2
우상호	2	0	2	0
이찬열	0	2	2	10
이철우	1	1	2	0
이학재	1	1	2	0
홍문표	0	2	2	3
《참고》 위 도표의 법안수는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17년 6월 발표·시상할 국회의원 헌정대상(국회의원 의정종합평가상)의 기초자료로서 수집, 분석한 자료 중 국회사무처의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비교한 것임.				

의혹 5. 본회의 등 각종 출석률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원(300명)의 평균보다 저조한 의원들이 ‘정량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의문이다.

정량평가의 기준이라는 출석률과 관련해서 정량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의 각종 출석률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평균(국회의원 300명)보다 못한 의원들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본회의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본회의 재석률**(개회시, 속개시, 산회시 재석여부)은 평가기간 중 전체의원 평균이 **69.59%**인데, 이우현 의원, 이찬열 의원, 황주홍 의원은 전체 평균에도 미달하였다.

재석률이 아닌 **본회의 출석률**만으로는 성실하게 참석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출석률 마저도 전체의원의 평균은 **94.21%**인데, 김삼화 의원, 이우현 의원, 이찬열 의원은 전체의원의 평균에 미달하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출석률**에 있어서 평균은 **87.74%**인데,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찬열 의원과 김종배 의원은 전체 의원의 평균에도 미달하였다.

의원이 법안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법안투표율**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74.38%였는데, 황주홍 의원, 이찬열 의원, 이우현 의원 등은 전체 의원의 평균에도 못미쳤다.

《정량평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의 첫째 각종 출석률 현황》

기간 : 2016.5.30.~2016.12.31

의원	상종류	본회의재석률	본회의출석률	상임위출석률	법안투표율
김도읍	우수(정량)	80.37%	100%	95.83%	90.61%
김삼화	우수(정량)	77.57%	94.12%	92.59%	94.58%
박광온	우수(정량)	71.03%	100.00%	100.00%	91.70%
박주현	우수(정량)	75.70%	100.00%	90.48%	71.48%
위성곤	우수(정량)	79.44%	100.00%	96.00%	93.86%
이우현	우수(정량)	57.94%	94.12%	100.00%	31.77%
이종배	우수(정량)	77.57%	100.00%	86.96%	98.56%
이찬열	우수(정량)	60.75%	91.18%	82.35%	61.73%
주승용	우수(정량)	71.96%	100.00%	100.00%	90.25%
황주홍	우수(정량)	54.21%	97.06%	100.00%	70.04%
20대 국회의원의 전체 평균		69.59%	94.21%	87.74%	74.38%

《참고》

1. 위 도표의 본회의 재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투표율은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17년 6월 발표·시상할 국회의원 헌정대상의 기초자료로서 수집, 분석한 자료 중 국회사무처의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비교한 것임
2. 본회의 재석률은 본회의의 개회시, 속개시, 산회시에 재석하고 있었는지를 아는 자료이며, 법안투표율은 법안표결과정에서 참석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지표(해당 의원이 표결참여한 법안수를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한 법안수를 나누어 백분율한 것임)임.
3. 20대 국회의원 전체평균은 우수의원 평균이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출석률을 평균한 것임.

의혹 6. 전문위원은 “입법취지에만 찬성(공감)할 뿐 법안내용에는 실질적으로 반대” 하였고, 단순히 법률용어를 정비한 법안이 우수법안으로 선정됨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입법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고(국회법 제58조), 법안심사 과정상 거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각계의 의견수렴내용도 표시되는데, 사실상 반대의 경우에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관행이다.

최우수(정성평가)가 된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대표발의한 법안이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된 것은 없고, 대안반영폐기된 대표법안만 2건이다.

이 법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안내용을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라면서 ‘다만’ 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우수입법(정책)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지고 만다.

《제20대 국회 첫째 이종명 최우수위원이 대표발의해 반영폐기된 법안》

의안번호	법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결과
20010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3인)	2016-07-21	2016-12-01	대안반영폐기
20008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3인)	2016-07-15	2016-12-29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6. 1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마련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은 보안, 계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용 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직 내 육아휴직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6.11.

법제상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정의규정을 두게 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새로이 이 법에 담으려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에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소비자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도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사용하는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다른 조문(안 제34조의5제9항제4호)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을 혼용하고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신설하는 호의 배열이 현행법 규정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등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권리 강화를 안전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 사이에는 그 의의나 효과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의혹 7. 대표발의한 법안 중 대안반영 폐기법안 1건인 경우를 살펴 보면 우수하다는 평가가 왜 나왔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안반영 폐기 법안이 1건인 경우(7명) 정성평가 우수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 정성평가 우수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개정법안에 대해 신중 내지 사실상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의 경우에는 대안반영폐기법안이 0건이고, 수정가결이 1건이기 때문에 도표에 포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심도높은 논의를 거쳐서 입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가결 및 대안반영법안이 1건인 의원의 대표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국회사무처 보도자료에는 가결법안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안반영폐기법안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데 정성평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반영폐기법안까지 조사하였고, 대안반영폐기법안이 여러건일 경우에는 어떤 법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1개 법안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부분 발췌하여 분석해 보았다.

의원명	대표발의 법안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부분발췌함)	비고
남인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 확대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면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비교가 가능해져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이 강화되고, 의료기관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의료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 하겠음. <u>다만,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어 단순한 가격 비교는 국민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u>	일부내용 신중 및 일부내용 찬성

		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면 대형병원 위주의 “가격덤핑” 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시 이러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용어분류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적용하도록 적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제출권 신설 남인순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하려는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대상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분석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됨.	
김해영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김해영의원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이러한 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또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방위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만 40세 이하인 남성 국회의원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의 설득력이 배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안규백의원안Ⅱ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으로 하는 현행규정(제18조)을 그대로 두면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민방위 대원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명시하고 있는바,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를 민방위 교육훈련 의무자로 추가하는 입법방식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됨.	신중
박법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법계의원 등 10인)	조부모 등의 면접교섭권 확대 면접교섭권의 주체 확대 여부는 일정한 혈연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등 부모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아동과의 면접교섭이 아동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의 양육 자율성 침해문제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함께 듣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조부모 등 친족의 면접교섭이 가정법원 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추후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 이를 “변경” 또는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	김삼화 의원 과 비 의 원 의 수 한 법 안 으로 신중

		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부모 등의 면접교섭권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마류사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박영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박영선의원안은 성실공익법인이 일부 대기업집단에 의해 편법 상속·증여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u>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자는 박영선의원안을 살펴보면,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여 공익법인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임.</u> 먼저, 성실공익법인 폐지에 관한 찬성 의견은 성실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의 사적지배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주식 출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필요 시 이러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하거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하는 등 <u>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u>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박용진의원안 ②정부안 ③원혜영의원안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준 마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바, 성실공익법인 폐지에 관한 동 개정안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사 실 상 반대
송옥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22인)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일부에 대해 가동을 중지하거나 취급물질 중 일부 물질에 대한 취급을 중단할 경우 신고 의무가 없음. 따라서 환경부는 해당 영업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휴업과 유사한 상태로 시설이 운영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됨에 따른 화학사고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취급시설 가동중지와 화학물질 취급 중단에 <u>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u>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취급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자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바, 취급물질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는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이익과 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범위를 취급시설을 가동 중지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통상적인 화재사고와 달리, 화학사고의 경우 잔류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u>화학물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u>	개정 취지 공감 및 사실상 반대

		러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u>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1차적으로 사고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 소속의 현장수습조정관이 아니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에게 가동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u>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가동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상 시설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 명령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명령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성격의 법 위반과 비교하여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휴업 또는 폐업 등을 할 때, 취급시설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u>다만,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폐업 시 잔여 화학물질 미처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u>	
윤종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청소년들이 담배와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담배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흡연모방행위가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u>‘미성년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담배제품 형태의 과자·장난감 등 물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방침(제16조제1호다목)에도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u> 또한 안 제59조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으로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판매·대여한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검토컨대, 현행 벌칙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등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대여 등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u>죄형법정주의 적정성의 원칙 상 죄형의 균형 차원에서 현행 벌칙 규정의 법정형에 대한 정비를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보임.</u>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도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으로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되어 안 제2조제4호나목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를 판매·대여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법정형 정비차원에서 보다 타당한 조치로 보임.	찬성

입중성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중 성 의 원 등 13인)	안 제55조는 여객 및 화물 사업용 차량에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운행기록장치의 분석결과를 교통안전 위해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주행거리,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GPS, 가속도 등 다양한 운행정보를 정밀하게 기록하는 장치로,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장착의무자는 이를 제출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차량운전자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과속, 급가·감속, 끼워들기, 장시간 운전 등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장치로서, 법 제55조제4항에서는 운행기록장치의 분석 결과는 교통안전점검의 실시나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의 목적으로함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참고 1). 개정안에 따라 사업용차량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시간·휴게시간·과속 등의 운행자료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로·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단속·처벌과 연계하는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다만, 운행기록장치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운행기록장치의 당초 도입취지가 위험운전 행태 개선을 위한 안전운행 컨설팅 등에 있었던 바, 분석결과를 단속·처벌에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운행기록자료의 제출실적이 2015년 말 기준 29.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단속을 통한 운행기록자료의 원활한 자료 추출 및 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안 제55조의2 및 제65조는 대형 승합·화물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치 미장착자나 기준에 부적합한 장치를 장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임.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2017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미 운행 중인 대형 승합·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영세한 운수업체나 1대 사업자 등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 제65조는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신중 내지 사실 상 반대
------------	--	---	----------------------

		험운전 행태를 보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다만, <u>지난 2009년 체험교육제도 도입 시 정부, 국회 및 운수업계는 운수종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의무적 교육방식보다는 별점 감소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교육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도입에 앞서 관련 운수업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u>	
김성식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33인)	김성식의원안은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과 41%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임. 결국,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여부는 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강화 여부, 국제적 추세 등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 또한, 해당 사안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와 소득수준별 세부담의 적정화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신중

의혹 8.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의 ‘위원회 대안’ 은 강병원 의원의 발의내용이 아닌 상임위 전문위원의 안임에도 강병원 의원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사무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결된 법안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어서 대안 반영폐기된 법안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이 하나도 없는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서 대안반영폐기된 법안까지 살펴보았다. 강병원 의원의 경우 평가기간 중 오직 1개의 대표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 되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29인)」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안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¹⁾, 최종적으로 통과된 위원회대안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안이 많이 반영된 것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대안내용》

현행	강병원 의원안	위원회 대안(본회의 가결)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 ⑥ (생략)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

1) 이를 감안하면, 환불 및 재구매는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 교체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만약 환불 및 재구매 명령도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면 어느 경우에 어떤 조치명령을 할 것인지를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예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거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손충덕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검토보고서, 2016.11, 8면)

	같음)	음)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금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⑦ ----- ----- ----- ----- ----- ----- ----- 배 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구 매를 명할 수 있다.	⑦ ----- ----- ----- ----- ----- ----- ----- 부 품의 교체를 명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 상의 평가기준에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정책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²⁾는 미국 및 EU도 배출가스 인증 관련 법률에 환불 또는 재구매를 규정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의 미국내 보상(교환, 환불) 사례는 민사소송을 통한 합의 결과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고 하여, 입안시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임을 알 수 있다.

2.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투명한 평가기준 및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법률소비연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에서 5월 10일 현재까지 원안가결된 법안 중 52%(100건 중 52건)가 법정형 정비법안, 문장순화법안 등 굳이 개별 의원이 발의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일괄 논의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면 되는 실적쌓기용 법안이었다. 이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입법보조기관이며, 국회(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이지 평가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선정기준도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을 평

2) 비영리공익단체로서 국내 제작차 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가해 국회의장 명의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상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상금까지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이 일일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상의 타당성과 기준의 명확성 등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회사무처가 영터리상을 만들어 시상하는 것은 국가 3부요인이며, 국가의 어른인 국회의장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신뢰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국회(의원)를 타락시켜 의회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의정활동 위스트(Worst) 의원을 베스트(Best) 의원으로 조작하는 등 국회(의원)을 우롱하여, 성실히 입법활동을 하는 다수의 국회의원까지 입법활동을 등한시한 채, 줄서기, 청탁, 찜짜미 등 뒷거래로 상을 수상하고자 영터리 입법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또한 공정한 평가기준이나 전체 평가내용 결과 공개 없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평가에 대한 국민(유권자)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성실한 입법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실적쌓기 법안 등으로 국회(사무처)가 주는 권위있는 상을 수상하였다고 홍보하면서, 더욱 국민의 혈세로 상금까지 받게 되면 결국은 국민(유권자)을 기망하고, 국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국회사무처 선정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의 입법 및 출석 성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의원입법성적 의원대표발의				회의출석성적	
의원명	상종류	원안가결	수정가결	가결법안합계	대안반영폐기법안	본회의출석률	상임위출석률
강병원	최우수(정성평가)	0	0	0	1	97.06%	90.00%
이종명	최우수(정성평가)	0	0	0	2	97.06%	100.00%
이찬열	최우수(정성평가)	0	2	2	10	91.18%	82.35%
권미혁	우수(정성평가)	0	0	0	2	94.12%	96.30%
김관영	우수(정성평가)	0	0	0	2	97.06%	100.00%
김상훈	우수(정성평가)	0	0	0	2	97.06%	94.44%
김성식	우수(정성평가)	0	1	1	0	100.00%	100.00%
김해영	우수(정성평가)	0	0	0	1	97.06%	90.91%
남인순	우수(정성평가)	0	0	0	1	97.06%	96.30%
박광온	우수(정성평가)	1	0	1	22	100.00%	100.00%
박범계	우수(정성평가)	0	0	0	1	97.06%	95.00%
박영선	우수(정성평가)	0	0	0	1	91.18%	52.38%
박완주	우수(정성평가)	0	0	0	2	97.06%	86.49%
박인숙	우수(정성평가)	0	1	1	3	85.29%	96.30%
송옥주	우수(정성평가)	0	0	0	1	100.00%	100.00%
엄용수	우수(정성평가)	0	0	0	2	97.06%	90.91%
윤종필	우수(정성평가)	0	0	0	1	91.18%	85.19%
임종성	우수(정성평가)	0	0	0	1	94.12%	92.86%
주광덕	우수(정성평가)	1	0	1	1	97.06%	65.00%
주승용	우수(정성평가)	7	1	8	15	100.00%	100.00%
황주홍	우수(정성평가)	4	4	8	4	97.06%	100.00%
김도읍	우수(정량평가)	0	3	3	8	100.00%	95.83%
김삼화	우수(정량평가)	2	1	3	7	94.12%	92.59%
박광온	우수(정량평가)	1	0	1	22	100.00%	100.00%
박주현	우수(정량평가)	0	0	0	4	100.00%	90.48%
위성곤	우수(정량평가)	0	1	1	5	100.00%	96.00%
이우현	우수(정량평가)	0	0	0	6	94.12%	100.00%
이종배	우수(정량평가)	3	1	4	5	100.00%	86.96%
이찬열	우수(정량평가)	0	2	2	10	91.18%	82.35%
주승용	우수(정량평가)	7	1	8	15	100.00%	100.00%
황주홍	우수(정량평가)	4	4	8	4	97.06%	100.00%

《참조》 위 도표의 법안수와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닌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2017년 6월 발표·시상할 국회의원 헌정대상의 기초자료로서 수집, 분석한 자료 중 국회사무처의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비교한 것임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보도자료 (2017. 3. 30. 목)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www.assembly.go.kr (02) 788-2116	
---	---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국회의원 3명(법안 정성평가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 28명(법안 정성평가 부문 18명, 법안 정량평가 부문 10명)에게 상패를 전달하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

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의원입법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에 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29명→10명)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12명→21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일률적·단편적인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도입한 정성평가 부문은 사회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제20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는 모범적인 국회이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되길 소망한다” 고 말했다.

〈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명단 〉

구 분		국 회 의 원
최 우수 (3명)	정성 평가	이찬열의원, 이종명의원, 강병원의원
우 수 (28명)	정성 평가 (18명)	주승용의원, 남인순의원, 박영선의원, 박완주의원, 김관영의원, 박인숙의원, 황주홍의원, 박광온의원, 김성식의원, 주광덕의원, 김상훈의원, 박범계의원, 윤종필의원, 권미혁의원, 송옥주의원, 엄용수의원, 임종성의원, 김해영의원
	정량 평가 (10명)	주승용의원, 이찬열의원, 황주홍의원, 박광온의원, 이우현의원, 이종배의원, 김도읍의원, 김삼화의원, 박주현의원, 위성곤의원